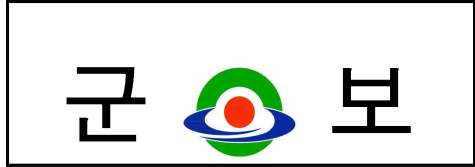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43호 2024. 7. 8.(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27호)
-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628호)
-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29호)
-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0호)

훈 령

- 예천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6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7호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활용 가능자원”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재활용품 수집인”을 “수집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하여 재활용품”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품 수집인”을 “수집인”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폐지 단가가 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미수거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고, 생활고를 겪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

- 재활용품 수집인 :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

나.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문 신설(안 제7조제2항)

다.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8호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예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무료 운행 등)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손액 산정) 결손액 산정 기준은 최근 3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하며, 군수는 합리적인 결손액 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결손액을 산정 할 수 있다.

제6조(결손액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버스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결손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결손액 지원 신청서

[illegible]

◆제정이유

-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버스요금 부담 해소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안 제3조)

-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

나. 운송수입금 결손액 산정(안 제5조)

- 결손액은 최근 3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

다. 이용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안 제7조)

-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 실시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9호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대상은 군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를 “제6조”로, “연간”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리카드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관리대장을”을 “관리카드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차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차·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 위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3항	5	10	20

※ 비고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내 부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면적, m ²)						화장실 명칭				
구 분 ^①				설 치 년 도		담당자 ^②	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성 명			
	관리주체						연락처			
관 리 인 ^③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및 시설 내역 ^④		여성용(개)			남성용(개)					
		대변기	장애인용 대변기	어린이용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장애인용 대변기	장애인용 소변기	어린이용 대변기	어린이용 소변기
		세 면 시 설 (남/여)	난방 시 설 (남/여)	냉방 시 설 (남/여)	환풍기 (남/여)	화장지 (자동 판매기) (남/여)	기저귀 교환대 (남/여)	핸 드 드 라이 어 (남/여)	청소도구 비치함 (남/여)	
									내부	외부
		CCTV 설치유무 (남/여)	오물처리 방 식	안심벨			탈취제 (남/여)			
				설치유무	종류	연계기관				
	수세식/ 수거식									

시설관리 내역 ^⑤	연 월 일	보수 내역	금 액 (천원)	보수업체 (연 락 처)

① 구 분 : 개방, 공중, 간이, 임시, 이동, 유료 등 화장실 구분

② 담당자 : 관리 부서의 소속, 성명(팀명 기재), 연락처 기재(행정전화번호)

③ 관리인 : 실제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이름, 연락처 기재

④ 규모 및 시설내역 : 남, 녀 화장실 별 변기 개수 및 보유 시설 현황 기재

※ 남, 녀 화장실 미 분리시 변기 개소수는 남성용에 기재

⑤ 시설관리 내역 : 공중화장실 등 보수 내역 기재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20.) 및 시행(2023. 7. 2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

-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도록 규정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주기 개정(안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주기를 상위법과 동일 하게 규정

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변경(안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관리카드로 서식 변경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0호

예천군의회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 · 과장”을 “국 · 실 · 과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시행 2024. 7. 1.)되어 집행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관계공무원 범위 변경 (안 제2조제2호)
 - 실·과장 → 국·실·과장

예천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60호

예천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제10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 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 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제 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u>주소정보 기본도</u>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 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u>주소정보 사업</u>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u>주소정보안내도</u>

◇개정이유

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성영상 공개 제한 해상도를 높이는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성영상 세부 분류기준 완화(안 별표 1)

- 위성영상의 공개제한 해상도 완화(4m → 1.5m)
-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 공개
- 위성영상 보안 처리를 위해 국가보안·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나. 주소정보 관련 용어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현행화(안 별표 1)

-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주소정보기본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주소정보 안내도’로, ‘도로명사업’을 ‘주소정보 사업’으로 변경

다. 기타 공간정보 공개 등급 분류기준 추가(안 별표 1)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 공간정보’ 분류기준 추가로 공간정보 보안 사항 미비점 개선·보완